

낙농품류 수입추천 요령

수출입 공고 제 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추천 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87년 12월 31일
한국유가공협회장

- 다 음 -

1. 추천대상품목

HS	품 목 명	추 천 대 상 품 목 명	자동추천품목 또는 규격	비 고
0401	밀크와 크림(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		}	1. 수급조절용
10 0000	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 이하의 것	좌 동		
20 0000	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고 100분의 6이하의 것	좌 동		
30 0000	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것	좌 동		
0402	밀크와 크림(농축하였거나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)			
	분상, 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의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.5이하의 것			
10 1010	탈지분유	좌 동		1. 수급조절용
10 1090	기 타	좌 동		2. 공 업 용 (카제인원료)

HS	품 목 명	추 천 대 상 품 목 명	자동추천품목 또는 규격	비 고
10 9000	기 타 분상, 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 의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.5를 초과하는 것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 지 아니한 것	좌 동		3. 사 료 용 (대용유원료)
21 1000	전지분유	좌 동		1. 수급조절용
21 9000	기 타	좌 동		
29 0000	기 타 기 타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 지 아니한것	좌 동		
91 100	무당연유	좌 동		
91 9000	기 타 기 타	좌 동		
99 1000	가당연유	좌 동		
99 9000	기 타	좌 동		
0403	버터밀크, 응고유와 응고크림, 요 구르트, 캐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 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(농축하 였거나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, 향 또는 과실이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			
10 1000	액상 요구르트	좌 동		
10 9000	기타 요구르트	좌 동		
90 1000	버터 밀크	좌 동동		
90 2000	응고유와 응고크림	좌 동		
90 3000	캐피어	좌 동		
90 9000	기타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	크 림		
0404	유장(농축하였거나 설탕 또는 기 타 감미료를 첨가 하였는지의 여			

HS	품 목 명	추 천 대 상 품 목 명	자동추천품목 또는 규격	비 고
	부를 불문한다)과 따로 분류된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(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			
10 1000	유장분말	좌 동	}	1. 제조분유원료용 2. 사료용(대용유 원료)
10 9000	기타유장	좌 동		
90 0000	기 타	좌 동		
0405	버터 및 기타의 지(脂)와 유(油)(밀크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)			
00 1000	버 터	좌 동	}	1. 수급조절용
00 9000	기 타	좌 동		
0406	치이즈와 커어드			
10 1000	신선한 치이즈	좌 동	}	1. 수급조절용 2. 치이즈원료용
10 2000	커어드	좌 동		
20 0000	갈았거나 분상으로한 모든 종류의 치이즈	좌 동		
30 0000	가공치이즈(갈았거나 분상의 것을 제외한다)	좌 동		
40 0000	블루바린 치이즈	좌 동		
90 0000	기타 치이즈	좌 동		
1901	유아(幼兒)용의 조제식료품(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)			
10 1010	제 0401호 내지 제 0404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조제분유	좌 동	1. 페닐, 알려진 성분을 제거한 특수조제분유(자동추천품목)	1. 조제분유용

2. 수입제한 :

국내외 경기동향, 국제수지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상기 수입추천 기준에도 불구하고 추천하지아니할 수 있다.

3. 추천기준 및 추천대상자 :

가. 추천범위 및 기준

유가공품원료 및 사료수급상 농림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량에 한함

나. 추천대상자

(1) 수급조절용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한국유가공협회

(2) 조제분유 원료용은 관계법에 의하여 조제분유 가공공장을 경영하고 있는자

(3) 사료용은 사료관리법에 의하여 대용유 제조업 허가를 득한자

(4) 공업용은 사료관리법제인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관계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자 공업용카제인

